□ 변경 대비표

효력발생일 : 2022년 08월 26일

신한마음편한TDF2040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

2 클래스 신설(종류C-O)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제15조 (투자대상자산 등)	제15조 (투자대상자산 등) ① (생략) 3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**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**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 다만, (이하, 생략) 4.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**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**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 이라 한다)	제15조 (투자대상자산 등) ① (현행과 동일) 3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**<삭제>**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 다만, (이하, 현행과 동일) 4.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**<삭제>**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 이라 한다)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제17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	제17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 3. 나. (생략) **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**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**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**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(이하 생략)	제17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 3. 나. (현행과 동일) **<삭제>**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**<삭제>**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(이하 현행과 동일)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제21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	제21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**제3영업일**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	제21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**3영업일**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제28조 (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)	제28조 (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・게시일 전날의 **대차대조표**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]" 이라 한다)을 공고・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	제28조 (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・게시일 전날의 **재무상태표**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]" 이라 한다)을 공고・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제30조 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	제30조 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**대차대조표**	제30조 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**재무상태표**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: 제37조 (보수)	제37조 (보수)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를 매일 **대차대조표**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	제37조 (보수) .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를 매일 **재무상태표**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: 제48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	제48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**<신설>**	제48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**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**

2. 클래스신설(종류C-O)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: 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. - 종류C-r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**<신설>** - 종류S-R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**<신설>** - 종류 C-re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**<신설>** **<신설>**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. - 종류C-r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**(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** - 종류S-R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**(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** - 종류 C-re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**(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** - **종류 C-O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정운용 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**
2. 클래스신설(종류C-O)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: 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(생략) **<신설>**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(현행과 동일) **16. 종류 C-O 수익증권**
2. 클래스신설(종류C-O)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: 제37조 (보수)	제37조 (보수) ③ (생략) **<신설>**	제37조 (보수) ③ (현행과 동일) [최초설정일로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 **16. 종류 C-O 수익증권** **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3.300]** **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2.000]** **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00]** **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80]** [2025년1월1일부터 2029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 **16. 종류 C-O 수익증권** **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2.800]** **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2.000]** **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00]** **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80]** [2030년1월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 **16. 종류 C-O 수익증권** **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2.300]** **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1.560]** **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00]** **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80]**
2. 클래스신설(종류C-O)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 자격 정정 : 제38조 (판매수수료)	제38조 (판매수수료) ③ (생략) 4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-e 수익증권, 종류 C-g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, 종류 C-p 수익증권, 종류 C-r 수익증권, 종류 C-w 수익증권, 종류 S 수익증권, 종류 S-p 수익증권, 종류 S-R 수익증권, 종류 C-pe 수익증권, 종류 C-re 수익증권, **<신설>**: 없음	제38조 (판매수수료) ③ (생략) 4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-e 수익증권, 종류 C-g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, 종류 C-p 수익증권, 종류 C-r 수익증권, 종류 C-w 수익증권, 종류 S 수익증권, 종류 S-p 수익증권, 종류 S-R 수익증권, 종류 C-pe 수익증권, 종류 C-re 수익증권, **종류 C-O 수익증권**: 없음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클래스 신설(종류C-O)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

2 투자전략상 문구 추가

3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4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

5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클래스 신설(종류C-O)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: 제1부,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제1부,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**<신설>**	제1부,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**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디폴트옵션)(종류C-O) DX131**
1. 클래스 신설(종류C-O)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**<신설>**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**신한마음편한TDF2040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(종류C-O) 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디폴트옵션))**
1. 클래스 신설(종류C-O)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(1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**<신설>**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**<신설>**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R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**<신설>** **<신설>**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(1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**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**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**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**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R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**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** **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디폴트옵션)(C-O)** **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**
1. 클래스 신설(종류C-O)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<계속>	(2)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**<신설>** **<신설>**	(2)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**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합니다.** **퇴직연금(디폴트옵션)** **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중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**

1. 클래스 신설(종류C-O)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: 제2부 11.매입, 환매 및 전환기준	제2부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 가. 매입 (2)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**<신설>**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**<신설>**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R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**<신설>** **<신설>**	제2부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 가. 매입 (2)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**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**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**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**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R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**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** **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디폴트옵션)(C-O)** **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**
1. 클래스 신설(종류C-O)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**<신설>**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**<신설>**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R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**<신설>** **<신설>**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**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**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**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**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R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**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** **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디폴트옵션)(C-O)** **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**
1. 클래스 신설(종류C-O)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<계속>	나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,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, <1,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 **<신설>**	나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,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, <1,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 **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디폴트옵션)(C-O)** **클래스 신설에 따른 수수료, 보수 및 비용 추가**
2. 투자전략상 문구 추가: 제2부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**<신설>** <생략>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**※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,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비중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여 운용합니다.** <현행과 동일>

3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-채권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**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**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**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**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)	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-채권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**<삭제>**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<현행과 동일> -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**<삭제>**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)
3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: 2. <생략> **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**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**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**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 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.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	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: 2. <현행과 동일> **<삭제>**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**<삭제>**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.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
3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**대차대조표**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	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**재무상태표**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3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**<신설>**	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**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**
4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: 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: **15.02%, 2등급**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: **15.06%, 2등급** **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)**
4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**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)**
4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: 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**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 및 2022년 07월 31일)**
5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: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- **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2년 07월 31일)**
6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: 제2부 4. 집합투자업자	제2부 4. 집합투자업자	제2부 4. 집합투자업자 **- 최근현황 갱신**
6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 **- 최근현황갱신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**- 최근현황갱신** 라. 운용자산 규모 **-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22년 07월 31일)**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

2 투자전략상 문구 추가

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

4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5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 : 집합투자기구의 종류	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**<신설>** **<신설>**	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**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합니다.** **퇴직연금(디폴트옵션)** **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중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**
2. 투자전략상 문구 추가: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	2. 투자전략 (1)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**<신설>**	2. 투자전략 (1)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**※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,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비중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여 운용합니다.**
3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: 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투자비용,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투자비용,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**- 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직전회계년도, 2022년 07월 31일)**
4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기준가격	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**대차대조표**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	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**재무상태표**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5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**- 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2년 07월 31일)**